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후면 촬영 무인단속장비 설치>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741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인철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4. 07. 15.
3. 회 부 일 : 2024. 07.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대부분 전면 촬영만 가능하여 자동차와 달리 후면 번호판만을 부착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등의 신호위반·과속·역주행 등의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이 가능한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및 제12조제4항).

개정안은 어린이 안전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 전·후면 모두 촬영 가능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및 제12조제4항).

– 2 –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전국에 16,375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내 11,924대의 전면 촬영용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현황('24. 6월 기준) >

(단위: 개소)

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기타
16,375	6,270	6,781	3,017	176	131

※ 자료: 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용장비 설치 현황 ('24. 6월 기준)>

(단위: 대)

구분	무인단속용 장비				
	계	전면 단속장비		후면 단속장비	
		속도.신호 위반 검용	속도위반	속도.신호 위반 검용	속도위반
계	11,924	7,086	4,838	223	-

※ 자료: 경찰청

개정안은 전면 촬영용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경우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이륜자동차의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단속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여전히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전·후면 모두 촬영 가능한 무인 단속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는 교통단속의 방법 중 하나로서, 구체적인 단속의 방법은 도로구조·교통환경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법률에 일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교통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후면 촬영 가능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2020년 연구 착수 후 2023년 시범운영(3개소)을 거쳐 2024년 말까지 646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 2년 차인 도입 초기 단계로, 새로운 시스템의 효과와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점진적으로 시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후면 촬영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도입 경과 >

- **(‘20. 2월)** 이륜차 무인단속장비 도입방안 연구 및 장비개발 착수(도교공단)
- **(‘21. 10월)** 후면 무인단속장비 잠정규격 제정
- **(‘22. 12월)** 시험 설치 및 성능검사 진행(4회), 후면 무인단속장비 표준규격 마련(10월) 서울·경기 남부 2개 시·도청 대상 총 3개소 시험 설치(12월)
- **(‘23. 4월)** 시험 설치 3개소에 대해 시범운영(1~3월) 후 정상 단속 개시
- **(‘23. 12월)** 이륜차 통행량, 교통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 전국 73대 설치
- **(‘24. 12월 예정)** 전국 총 646대로 확대

※ 자료: 경찰청

1) 경찰청에 따르면, 후면 장비는 정지선으로부터 20~40M 뒤에 설치되므로 표지판의 간섭을 받거나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측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도로 상황을 고려할 필요성이 더욱 높다는 설명임.

참고로, 재원 부담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추가 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565억원~1,691억원(연평균 113억원~338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344

<보조자료>

▶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운영 현황

(단위 : 건, %)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6월
운영(대)	870	1,379	4,525	8,423	11,256	11,924
증감(%)	-	+58.5	+228.1	+86.1	+33.6	+5.9

▶ 후면 무인단속장비 개요

- (개요) 카메라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통행 차량(이륜·사륜차)의 속도·신호 위반 등을 검지하고 위반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장비
- (단속 기능) 사륜차의 신호·과속 위반 및 이륜차의 신호·과속 및 안전모 미착용 단속
- (설치 현황)

<'24. 6월말 기준>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설치 (223)	8	12	54	16	1	2	5	52	13	18	4	2	4	9	5	16	1	1
예정 (423)	31	6	0	3	11	0	5	294	11	2	8	16	1	20	11	2	0	2
계(연말) (646)	39	18	54	19	12	2	10	346	24	20	12	18	5	29	16	18	1	3

- (장비 사진)

<후면 무인단속장비 단속 원리>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 사례>

▶ 전·후면 무인단속장비 설치 위치 및 촬영 각도

